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 12. 12 [규칙 제235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6>

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제작비용”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증평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
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 2022. 12. 29>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내용	건축물 소재		
	도 로 명	신청사유	[] 훼손
	건물번호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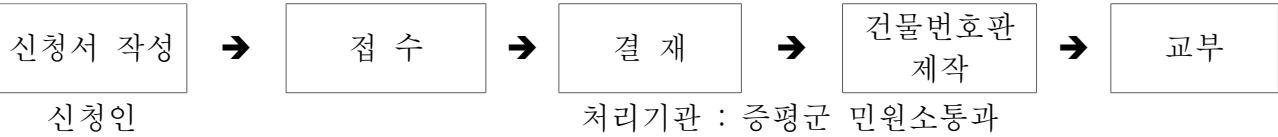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증평군 조례로 정함 「증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고시된 제작비용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